

美國의 政府購買 關聯法規에 관한 考察

尹忠沅* · 河炫秀**

-
- I. 序論
 - II. Buy-American 規定
 - III. 其他 國內規定
 - IV. 美國이 締結한 國際協定
 - V. 結論
-

I. 序論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및 소속기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조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국민총생산액의 10~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점차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구매와 관련한 무역규모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소속기관이 그들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확보된 자금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정부기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중에는 일반적으로 구매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명세와 입찰내용 등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는 정부구매관련 법규는 국가안보, 경제적 후생 그리고 국제경쟁으로부터 국내시장의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 규정을 두거나 외국기업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¹⁾ 차별적 대

* 全北大學校 商科大學 貿易學科 教授

우 형태에는 첫째, 외국기업이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금지시키는 경우, 둘째, 정부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자국산 산품을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기업에게 특혜적 대우를 하는 경우, 셋째, 정부구매품에 관하여 불확실한 조건과 기술적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차별적인 정부구매법 및 규정이 정책적으로 실시될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흐름을 현저히 왜곡시키게 된다. 차별적인 정부구매정책의 영향은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을 크게 떠맡고 있을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서비스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나감에 따라 특히 민감해 진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부구매분야의 무역자유화협정을 GATT 창설시부터 제기하였으나 당시에는 무산된 바 있다. 그 후 동경라운드 협상시에는 비록 다자간이 아닌 복수국가간협정이지만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을 골자로 하는 정부구매협정(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 체결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에는 대폭 수정된 복수국가간 정부구매협정이 체결되었다.²⁾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에서의 정부구매협정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정부구매협정 역시 각국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한 정부기관과 특정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협정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각국 정부의 외국물품 및 외국공급자와의 구매계약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SDR 130,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물품 및 외국공급자와의 정부구매계약은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각각 30%와 14%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8%와

** 全北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博士課程

1)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Uruguay Round Committee : Subcommittee on Unfair Trade Policie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Products in Government Procurement", in 「Unfair Trade : The Complete Report on Unfair Trade Policies by Japan's Major Trading Partner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1993. p.63.

2) Vinod Rege,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Issues of Concern and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Vol.35,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p.492-494.

0.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³⁾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외국 물품 및 외국공급자와의 구매계약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 동안 미국이 정부구매협정의 체결을 주도해 왔던 국가로서 매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강력히 적용해 온 이른바 바이아메리칸정책(Buy American Policy)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공공지출액이 GDP중 연평균 35~37%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부구매정책의 자유화에 각국의 큰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⁴⁾ 또한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정부 역시 미국의 정부구매관련법의 내용과 자유화 정도를 벤치마킹하여 그들의 법규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용하는 국내정부구매관련법규와 미국이 체결한 국제정부구매협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WTO 정부구매협정에 참여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부구매관련법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국내법인 Buy American 규정 및 기타 국내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국제협정(복수국가간 협정, 지역협정, 쌍무적 협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쟁점사항들을 찾아보 고자 한다.

3) WTO,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1996, p.82.

4) 2001년도의 경우 미국 정부의 소비지출액 및 총투자액은 1조 7천 4백만 달러로서 이는 GDP의 17.5%로 밝혀졌다. 통계를 좀더 자세히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품 및 서비스구입을 위한 국방소비지출액은 3천 2백억 달러, 비국방소비지출액은 총 1천 7백억 달러이며,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총 9천 1백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한편 평가절하와 피고용자보상을 제외한 서비스구입지출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1천 2백 1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4백 6십 6억 달러이었다. 이 밖에 총투자지출액(구조물 및 장비)을 보면 연방정부 1천 6십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2천 2백 6억 달러에 달하였다.(WTO,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2001, p.22.)

II. Buy-American 規定

1. 聯邦政府次元의 規定

가. 一般規定

미국은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에 의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차별적인 정부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33년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 of 1933 : BAA of 1933)과 같은 국내법은 미국의 국제의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933년 바이아메리칸법은 동경라운드 협상직후 통과된 1979년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되고⁵⁾ 그후 1988년에 다시 상당부분 보완으로 되었다. 즉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7편(Title VII)에 규정된 이른바 1988년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 of 1988: BAA of 1988)⁶⁾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 법은 이전의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정부구매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정부구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서 그들로 하여금 동 협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둘째, 동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공급자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동 협정에 서명하도록 촉구하는데 있었다.⁷⁾

그 동안 이와 같이 바이아메리칸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부구매규정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동 법은 정부구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첫째, 연

5) Trade Agreement Act 1979, 19 U.S.C. §§2501-82(1982) (codified as amended at 19 U.S.C.A. §§2511, 2515(West Supp., Dec. 1988).

6) Title VII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Pub. L. No.100-418, 102 stat, 1107.

7) Georgetown Law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The Buy American Act of 1988 : Legislation in Conflict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20, No.3, 1989, p.604.

방정부기관장이 공공이익과 불일치하지 않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⁸⁾ 둘째, 미국은 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s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미국산 제품은 부품사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⁹⁾

또한 1954년 공포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0582호에서는 정부 각 기관 또는 부처의 장은 미국산 제품가격이 외국산가격보다 6%이상 비싼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여 외국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산 제품가격이 6%이상 비싸더라도 동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와 관련한 우대(특혜)규정은 외국정부의 미국공급자에 대한 정책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1962년이래 NATO회원국과 체결한 상호양해각서(Reciprocal Memoranda of Understanding)에 의한 군수품의 구매를 제외하고는 국익조항(national interest clause)에 따라 특별히 국산제품과 외국산제품가격의 차이를 50%까지 인정하고 있다.¹⁰⁾ 또한 노동공급과잉지역(labor-surplus area)에서 생산된 제품인 경우 12%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아메리칸 규정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한 해외에서의 구매(overseas procurement)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서비스계약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¹¹⁾ 정부구매에 관한 복수국가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적용대상인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계약국의 상품은 바이아메리칸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8) Buy American Act, Title III, Section 2.

9) Buy American Act, Title III, Section 2 (iii).

10) WTO(1996), op. cit., p.84; 김규태, "미국의 통상관련법 개관", 산업연구원, 1996 .6, p.245.

11) 따라서 Buy American Act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① 해외에서의 구매(미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함)

② 국내제품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③ 국내산 제품구매가 공익에 해로운 경우

④ 국내산 제품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GATT,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1994, p.87.

나. 特定規定

연방정부는 전술한 수정된 1933년 바이아메리칸법 이외에도 연방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특정의 공공구매에도 바이아메리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차원의 특정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1) 國家安保관련 法規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경라운드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서도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다수의 미국내 법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수정된 1941년 國防費歲入法(Defense Appropriation Act)¹³⁾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정부구매시 정부구매기관은 입찰시에 국제입찰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962년 通商擴大法 제232조에 의거한 국가안보조항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모든 수입에 적용된다.

③ 美國國家安保 및 防衛製品生産法(U.S. National Security and Production Acts)은 산업동원의 기반(industrial mobilization base)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매년 외국으로부터 조달되는 공급품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와 더불어 1992년 國防部歲入法(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s of 1992)에서는 매년 국방물자구매를 위한 바이아메리칸 요건(Buy American requirements)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에 의하여 구매되는 제품 중 대외소싱(foreign sourcing)에 제한이 가해지는 제품은 석탄제품, 식품, 직물, 의류, 특정의 철제품 및 도구, 특정의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용 도구, 마찰방지용 베어링, 수퍼컴퓨터,¹⁴⁾ 부풀릴 수 있

12) 이하의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구매관련 규정 또는 조치들은 연방물자구매규정(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과 동 규정을 보완하고 이행하기 위한 특정기관의 구매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WTO(2001), op. cit., p23.

13) 이른바 Berry Amendment, Byrnes-Tollefson Amendment, 그리고 1992년 국방부 세입법(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 Act of 1992)에서는 국방부가 조달하는 대부분의 식품, 의류, 납작한 철제 접시류(steel flatware), 손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측정용 도구(hand held or measuring tools)들은 미국산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ATT, op. cit., p.88; WTO, op. cit., p.78.

는 보우트(inflatable boat)를 포함한 해군용 선박 등이다. 이와 더불어 기타의 제품구매의 경우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2) 北美州動員球域에 따른 캐나다에 대한 內國民待遇

북미주동원구역(North American Mobilization Sphere)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국방부가 실시하는 대외구매에 대하여 대부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국가우주정책지침에 의한 제한

1990년 국가우주정책지침(National Space Policy Directive of 1990)에서는 미국정부의 인공위성 발사시 미국산 발사장비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 의한 구매는 동경라운드의 정부구매협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NASA는 특별히 모든 과학 및 전자장비와 각종도구 및 시스템을 미국내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한다.

4) 특정구매에 대한 의회의 입법조치

미국의회는 특정한 구매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입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보통 일정한 지속기간(a fixed duration)을 정하여 실시되며, GATT 사무국이 1994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일반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 구매하는 측정용 도구, 건물용 종이, 절연재(insulation materials), 사진촬영용 장비, 사무기기, 사무용 장치 및 문구류 등.

② 미국공급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에 속하는 계약자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연방정부의 건설공사.

14) 1987년이래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산 슈퍼컴퓨터만을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만일 국내제조업체가 일정한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대외구매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미국산 구매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其他의 政府購買에 대한 制限

이 밖에도 연방정부 차원에 실시되는 미국물품 우선구매규정(Buy-American Provisions)은 다음과 같다.

① 1984년 契約競爭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of 1984)에서는 산업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구매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1933년 공항 및 항공안전, 수용능력, 소음개선 및 운송수단간의 통합운송법(Airport and Airway Safety, Capacity, Noise Improvement and Inter-modal Transportation Act of 1933)에는 연방항공처(Federal Aviation Authority)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가격 및 국산부품비율상의 특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無公害水域法(Clean Water Act) 제39조에 의하여 개정된 聯邦水域污染統制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서는 수역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미국공급자에게 6%의 가격차이 특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개정된 1978년 암트랙 改良法(Amtrack Improvement Act of 1979)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철강제품, 철도차량(rolling stock), 동력차량장비(power train equipment) 등을 미국공급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농촌전력화사업청(REA: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은 전화 및 전자사업당국에게 대부 및 대부보증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REA가 이러한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미국산 자재 및 장비를 구입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⑥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의 일부인 무공해석탄기술프로그램(Clean Coal Technology Program)에서는 U.S. A.I.D.에 의하여 선정되는 프로젝트 수행시 최소한 50%의 미국부품으로 구성된 장비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당국에 의하면 특혜적 마진(preferential margin)은 적용범위 또는 적용횟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반대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도시지역 대량수송장려금프로그램(urban mass-transit grant programmes)에 의거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10만 달러 이하의 정부구매에

대해서는 특혜적 마진이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구매 중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정부구매협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점차 바이아메리칸 규정 또는 바이스테이트 규정(Buy-State provision)상의 특혜적 마진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2. 州政府 또는 地方政府次元의 規定

주정부에 의한 구매는 WTO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동경라운드의 정부 구매협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많은 지방정부와 함께 37개 주정부의 구매법에는 바이아메리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바이스테이트 규정(Buy State provisions) 및 바이로컬 규정(Buy Local provisions)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구매는 바이아메리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1978년 陸海運送支援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78)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운송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동 법에서는 각 주정부는 미국산 장비에 대해 가격면에서 25%의 특혜 부여와 함께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스테이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 두 개의 오퍼가 동일한 경우 주내의 입찰자 또는 제품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ii) 주내의 입찰자 또는 제품에 대해 가격상의 특혜(price preference)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보통 다른 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보다 높은 일정한 비율의 가격특혜를 준다. iii) 바이스테이트 정책을 실시하는 다른 주의 입찰자보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의 입찰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다¹⁵⁾.

1992년 GATT 사무국의 Trade Policy Review에 의하면 주정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바이아메리칸 규정은 주정부에 의하여 주로 철도 등과 같은 공공사업, 고속도로 및 교량건설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 규정은 1933년 BAA에

15) J. D. Southwick, "Binding the States : A Survey of State Law Conformity with standards of the GATT Procurement Co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Vol.13:1, 1992, pp.57-99.

의거 공공구매자 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자와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¹⁶⁾.

주정부가 바이아메리칸 규정 또는 바이스테이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품명세(specifications)가 얼마나 경쟁을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작성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품명세를 과도하게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게 되면 그만큼 배타성이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2년 GATT Trade Policy Review 에 의하면 30개 주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나 5개 주에서는 수입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제품명세를 요구하고 있다.

Ⅲ. 其他 國內規定

1. 小規模企業에 대한 別途規定

미국의 경우 다른 여러 가지 국내법¹⁷⁾에서와 같이 배타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규모 조건불리기업(SDB : Small Disadvantaged Business)¹⁸⁾, 노동력공급 과잉지역(labour surplus areas)내의 기업 또는 역사적으로 저개발산업지역(HUBZone : Historically Under-utilised Zone)¹⁹⁾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한 구매(set-aside procurement)를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16) GATT, op. cit., p.93; Servic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on United State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Problems of Doing Business with The U.S.", 1993, p.33.

17) 예컨대 Public Law 95-507(1978년 10월)에 의하여 개정된 1953년 小規模企業法(Small Business Act of 1953)에서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공공구매 중 상당한 비율(a fair proportion)을 소규모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Serv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p.33 참조. 또한 1991년 陸海運送手段間 效率提高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1991)에서는 철강제품에 대해 기존의 바이아메리칸 제한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미국의 소규모 조건불리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으로부터 총세입액의 10%를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18) 소규모 조건불리기업(SDB)에 대한 지원은 이른바 소규모 조건불리기업 인증 및 자격 프로그램(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ertification and Eligibility Program)에 의거 이루어진다.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에 의하여 SDB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소규모기업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결정된 개인이 적어도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관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WTO(2001), op. cit., pp.25-26.

19) 역사적으로 저개발산업지역(HUBZone)내의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 이른바 "Historically Under-utilised Business Zone(HUBZone) Act of 1997에 근거하고 있다. ibid., p.25.

업무는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추진하는 이른바 중소기업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1994년 GATT의 Trade Policy Review에 의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상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예는 18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들 주정부의 규정내용을 보면

i) 가격특혜를 주는 경우로서 소규모기업은 입찰가격이 비록 일정비율만큼 높더라도 다른 공급자에 대해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다.

ii) 순수한 Set-Aside Program이 실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소규모기업으로부터의 정부구매가 배타적으로 실시된다.

iii) 쿼타제도가 마련된 경우로서 이 경우 총 정부구매액 중 일정한 비율을 소규모기업에게 할당하게 된다.

2001년 WTO의 Trade Policy Review에 따르면 2000년도 Set-Aside Program에 의거 이루어진 계약금액은 연방정부 차원의 구매액의 8%이었다. 동 계약금액은 지난 1991년의 경우 25%이었던 바, 근년에 와서 점차 감소되어 온 셈이다.

2. 入札節次

25,000달러 이상의 연방정부구매에 대한 입찰은 “Commerce Business Daily”誌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전자입찰절차(electronic tendering procedures) 역시 가능하나 아직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 입찰 공고상에는 입찰명세와 응찰마감일자 등이 포함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은 보통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간행물에 공고된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중에서 정부구매협정에 가입한 37개 주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정부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주정부는 USTR이 당해 주정부의 입찰시 “Commerce Business Daily”에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정부의 간행물에 공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주정부는 정부구매협정에 의거 Internet에 홈페이지의 이용가능성을 개발하고 있다.

IV. 美國이 締結한 國際協定

1. GATT初期의 協定

정부구매에 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본래 무역차별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ITO현장을 입안할 당시부터 정부구매분야의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른 국가의 반대로 ITO현장에서는 물론 GATT협정에서도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GATT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정부구매의 경우 국적(nationality)에 입각하여 외국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구매시 외국상품과 서비스가 품질 및 가치가 우수하더라도 국적상 단지 자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배제될 수 있었다.

2. 東京라운드에서의 政府購買協定

그러나 1960년 이후 각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차별적 관행이 세계무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케네디라운드협상 당시부터 정부구매분야는 다자간 협상의 대상이 되었으나 각국은 동 분야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규제방법을 놓고 의견 일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한편 1963년 케네디라운드 협상의 개사와 동시에 OECD 역시 정부구매에 관한 국제협정의 제정작업을 착수하였으며, 1973년에는 국제협정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초안에 대해서도 협정의 대상이 되는 정부구매분야, 조달기관의 범위, 무차별원칙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주요국간에 의견대립을 보였다. 한편 선진국 조달시장의 개방에 큰 관심을

보여 왔던 개발도상국들은 정부구매분야의 무역자유화문제가 OECD보다는 GATT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구매분야의 국제협정에 관한 논의는 1973년~1979년에 걸쳐 진행된 동경라운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²⁰⁾

동경라운드에서 이루어진 정부구매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최초의 복수국가간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참여한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칙(specific rules by entities)이 마련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용하였다.²¹⁾

① 국내의 제품 및 공급자, 그리고 협정의 다른 당사국의 제품 및 공급자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② 외국의 제품 및 공급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기술적 명세(technical specifications)의 이용을 금지한다.

③ 자격을 갖춘 외국공급자가 관련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찰절차가 충분해야(적절하여야)한다.

④ 동 협정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준수에 관한 규정을 둔다.

동경라운드에서 이루어진 협정은 정부구매를 국제경쟁에 개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 이후 10여년 간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동 협정은 모든 정부구매계약이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도록 하는데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즉 다음의 4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i) 동 협정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EC, 핀란드, 홍콩,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 등 13개국만이 채택하였다. 즉 GATT회원국의 다수가 정부구매분야의 개방 약속을 하지 않았다.

ii) 동 협정의 범위 역시 상품구매에 한정되었다. 서비스의 경우는 상품조달에 부수되는 경우(if they are incidental to the supply of products)와 서비스가 상품 구매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iii) 동 협정은 직접적인 또는 실질적인 정부통제를 받는 기관만이 적용 받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박영사, p.296.

21)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Uruguay Round Committee : Subcommittee on Unfair Trade Policies, op. cit., p.64.

iv) 동 협정은 다만 130,000 SDR(약 2천4백만 달러) 이상의 정부계약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부구매계약의 약 50%가 동 협정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았다.

미국은 동경라운드 정부구매협정에 서명한 주요국가중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의 비임금 구매액(non-wage procurement) 중 7~8%를 대외경쟁에 개방시켜 놓았다.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아 GATT에 통보된 입찰 중 8~12%는 비미국회사들이 공급계약자로 낙찰되었다. 반면 미국이 GATT/WTO 협정의 적용하기로 통보한 것이면서도 동 협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GATT/WTO 협정을 훼손시킨 입찰규모는 약7%에 달한다.²²⁾

3. 雙務協定 및 地域協定

미국은 그 동안 東京라운드에서 이루어진 정부구매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자국회사들의 외국정부구매시장의 접근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쌍무협정과 지역협정은 물론 후술하는 1994년 WTO 복수 국가간 정부구매협정(1994 WTO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통하여 미국회사에게 정부구매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 제7편에서는 당국이 동 협정에 따라 부여된 정부구매시장에 대한 접근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가. 雙務協定

미국은 또한 21개 쌍무적 협력산업 방위협정(Bilateral Co-operative Industrial Defense Agreements) 또는 상호구매협정(Reciprocal Procurement Agreements)을 체결하고 있다.²³⁾ 이들 협정을 통하여 미국과 협정당사국은 국

22) 1979년 通商協定法 제301조는 국제정부구매협정(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1933년 Buy American Act와 노동력공급 과잉지역에 대한 별도혜택규정(소규모기업에 대한 별도혜택규정은 제외)의 차별적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또한 1979년 법 제302조는 대통령은 제301조에 의한 면제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당해 국가가 미국회사에게 충분한 정부구매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 국가들에 대한 구매(procurement to nondesignated countries)를 금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1996), op. cit., p.86, footnote No.101.

방특자시장(defense market)에 호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동맹국간에 장비의 호환성(interchangeability)과 적합성(compatibility)의 이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당사국 중 한쪽에 의하여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3년 1월 이후 파기된 협정은 없는 상태이다.

나. 미국-캐나다 자유貿易協定 및 미국-이스라엘 자유貿易協定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25,000달러 이상의 모든 정부구매에 대한 쌍무적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정부구매심의국(Procurement Review Board)을 설치하여 고정(complaints)을 접수하고 조회(inquiry)를 처리하며,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게 된다. 동 협정에서는 입찰기관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동 협정의 당사자는 특정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지만 US\$50,000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NAFTA

NAFTA에서는 위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정부구매규정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NAFTA 제10장에 포함되는 계약범위는 건설부문과 서비스분야의 계약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당국에 의하면 NA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회원국내 기업들은 각 NAFTA회원국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계약에 응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AFTA에서의 정부구매규정은 US\$50,000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협정에 포함된 US\$6,500,000이상의 건설서비스의 계약에 적용된다.

NAFTA의 정부구매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다른 지역협정 또는 쌍무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의 구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²⁴⁾

23) 이러한 협정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고 영국과 체결되어 있다. Ibid., p.86.

24) 그러나 NAFTA 제10장에서는 회원국은 국내의 주 및 지방정부가 자발적이고 호혜적으로 제10장의 의무를 지켜나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NAFTA, Article 1024 : 3.

4. 1994 WTO協定

UR협상에서 타결된 1994년 복수국가간 정부구매협정(1994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동년 1월 9일자로 동경라운드협정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1994년 협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구매(federal procurement), 연방기관에 의한 구매(procurement by federal agencies), 일부 특정의 주 및 지방당국에 의한 구매(procurement by selected State and local authorities)에 적용된다.

미국은 동 협정의 일부 회원국들과 포괄적인 패키지협정(comprehensive package)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협정범위(coverage)를 모든 서명국에게 자동적으로 확대적용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현재 1994협정에 의거하여 자국의 모든 개방약속(full commitments)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EU(신규 가입한 EU국가 포함), 이스라엘, 한국, 일본에게 허용해 주고 있다(다만, 미국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전기공사는 양국의 호혜적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어 있음). 한편 스위스, 노르웨이 및 캐나다는 아직 미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전범위(full coverage)를 적용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머지않아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994년 WTO 복수국가간 정부구매협정에 따른 미국의 개방약속사항
개요 1)

	상 품 및 서 비 스	건 설
중앙 정부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하한선): SDR 130,000 이상 · MFN 대우 · 연방항공처(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5백만 이상 · MFN 대우 · 연방항공처(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예외
하부 중앙 정부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355,000 · MFN 대우는 37개주 구매에만 적용⁴⁾ · 캐나다,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제외됨 · EU의 입찰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North Dakota, West Virginia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24개 市 중 7개 市의 구매계약시 적용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5백만(한국의 경우 SDR 15백만) · 호혜주의는 37개주의 구매에 대해에만 적용⁶⁾ · 캐나다,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제외됨 · EU의 입찰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North Dakota, West Virginia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24개 市 중 7개 市의 구매계약시 적용⁵⁾
공공 사업 기관 (public utilities)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400,000 · MFN대우는 뉴욕 및 뉴저지 항구당국, 볼티모어 항구당국, 뉴욕동력관리당국(New York Power Authorities)의 구매, 그리고 농촌지역전력화사업청(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동력생산프로젝트(power generation projects)에 의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함 · 캐나다,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제외됨(일본은 전력의 생산 및 분배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5백만(한국의 경우 SDR 15백만) · MFN대우는 뉴욕 및 뉴저지 항구 당국, 볼티모어 항구당국, 테네시 벨리 당국(Tennessee Valley Authority), 동력마케팅 관리국(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 세인트로렌스 하천관리당국(St. Lawrence Seaway), 뉴욕동력관리당국, 그리고 농촌지역전력화 사업청(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에 의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함 · 캐나다,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제외됨 · EU의 입찰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Massachusetts Port Authority가 실시하는 입찰계약에 대하여 적용함(일본은 전력의 생산 및 분배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대상: SDR 182,000 · MFN대우는 Tennessee Valley Authority,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 St. Lawrence Seaway에 의한 구매에 적용함 · 캐나다, 스위스 및 노르웨이는 제외됨 · EU의 입찰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Massachusetts Port Authority가 실시하는 입찰계약에 대하여 적용함(일본은 전력의 생산 및 분배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됨) 	

주 : 1) 통신부문계약은 제외됨. 미국의 소규모기업과 소수가 소유한 기업은 제외됨.

미국의 오퍼(offer)는 그 중에서 특히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됨 : 운송(운송용품의 구매가 부수되는 경우는 제외), 준설작업(dredging), 해외군사서비스구매, 공공기업서비스, R&D 서비스, 그리고 인쇄서비스(Annex II에 함함).

2) NASA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외됨.

3)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주정부대량수송 및 고속도로 개량 프로젝트(State mass transit and highway improvement)는 이러한 개방약속(commitment)에서

제외됨. 상당수의 州들은 국제무역에 속임수가 되는 장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의 종합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 4) 인구가 가장 조밀한 5개주(California, Pennsylvania, New York, Florida 및 Texas)가 포함됨.
- 5) Chicago, Detroit, Boston, Dallas, Indianapolis, San Antonio, 그리고 Nashville.
- 6)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공항들은 이러한 개방약속에서 면제됨.

자료 : 1994 WTO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eneva, WTO Secretariat; Schott, Jeffrey J. assisted by Johanna W. Buurman(1995), "The Uruguay Round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ton D.C.; WTO Secretariat,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1996, p.88.

현재 미국은 모든 서명국들이 미국회사에게 당해 국가의 정부구매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쌍무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정부구매계약의 투명성(transparency), 개방성(openness), 그리고 정당한 절차(due process)에 관하여 중간협정(interim arrangement)의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1994년 협정은 1979년 협정에 비하여 국제경쟁에 개방된 정부구매의 총금액을 증가시켰다. 상품 및 서비스부분에서 국제경쟁에 개방된 구매액 중 가장 큰 부분은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이다. 건설부문에서 주정부 및 지방당국은 1994년 협정에 의거 미국이 개방키로 약속한 규모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개략적으로 볼 때 미국의 개방약속의 50%이상은 하부연방정부(sub-federal)차원과 공공사업기관(public utilities)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협정에서는 상품의 국산부품사용비율지정(local content), 구매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당해 국가에의 투자조건 및 기타지역에서의 무역 등의 상쇄구매(off-sets)를 금지시키고 있다.²⁵⁾ 그러나 동 협정은 국가안보 또는 국방방위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구매의 경우 상쇄구매금지조항은 면제된다.²⁶⁾ 현재 미국정부는 외국 공급원으로부터 국방구매를 할 경우 상쇄구매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미국회사들이 외국시장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쇄구매제도의 활용을 감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5) WTO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X VI .

26) 1994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X X III (1).

5. 外國의 國際協定履行如否에 대한 監視 및 不正慣行防止措置

1994년 정부구매협정, 쌍무협정 및 지역협정 등이 체결됨으로써 미국 수출업자들의 대외구매계약은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외국정부가 이들 협정을 여하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979년 통상협정법 제7편(Title VII)에 의거하여 USTR이 감시하고 있다.²⁷⁾ USTR은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의거하여 조사신청을 하는 즉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1993년 5월 28일 이래 미국은 연방정부가 행하는 통신부문의 구매계약 대상에서 EU 공급자를 배제시켜 오고 있다(독일기업은 예외). 또한 이러한 조치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위스가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이들 신규 가입국에게도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EU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들은 일정한 수준 이하의 공공사업, 보급품 및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1979년 통상협정법 제7편에서 규정된 년별 심사제도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는 3조 iv항에 열거된다.

海外腐敗慣行法(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 Act)에 따라 미국 수출업자들은 외국에서 입찰계약에 참여할 때 일정한 행동기준(standards of conduct)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 즉 동 법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자사가 참여하는 입찰업무에 관여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미국 당국은 외국기업들이 뇌물을 공여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경우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²⁸⁾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OECD, 미주정상회의, APEC등의 국제협력

27)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33년 BAA제정 이후 개정된 법에서 지속적으로 정부구매와 관련한 외국의 제한정책을 감시하는 규정을 도입해 왔다. 주된 개정 내용을 보면 1933년 BAA에서는 정부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비하여 미국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차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 BAA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 구매계약시 미국공급자에게 차별대우하는 국가를 제재(sanction)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1979년 법에서는 대통령이 동경라운드 의 정부구매협정에 서명한 국가에게는 1933년 BAA에 의거한 가격차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 BAA에서는 외국정부가 정부 구매시 미국공급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Georgetown Law Center, op. cit., pp.602-603.

28) Statement by Department of Commerce Ron Brown to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12 October 1995.

은 물론 WTO 정부구매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교역 당사국이 정부구매정책의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V. 結論

이상과 같이 미국의 정부구매에 관한 법규를 고찰해 볼 때, 미국은 1933년 BAA가 제정된 이후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시 매우 광범위한 제한조치를 실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한조치의 형태 역시 외국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경우를 비롯하여 국산화비율의 지정 또는 미국 공급자에게 일정한 가격상의 특혜를 주는 방식 등 외국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 조치 및 미국공급자에 대한 특혜조치가 적용되어 왔다. 그 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에서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정부구매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서명국들이 동경라운드에서 타결된 정부구매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그에 따라 미국은 1988년 BAA에서 미국 공급자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외국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USTR의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등 정부구매시장의 개방을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동안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형적인 불공정 무역법이라고 볼 수 있는 1933년 BAA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자국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없이 외국정부구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더 집착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UR협상에서는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UR협정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타 정부기관에까지 확대적용하고,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구매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달방식면에서 일반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리스, 임차 및 할부구매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현행 정부구매법규 중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

항은 첫째, 지금까지 미국이 실시해 온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들의 미국물품 우선구매규정들을 여하히 UR의 정부구매협정과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현행 국내법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국제협정보다 국내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헌법규정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서명국들과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UR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서는 상쇄구매의 금지조항을 둠으로써 각국의 정부구매규정에서 국산부품사용비율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구매관계 법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국산부품사용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도 주요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일정한 수준(6%)의 가격차이와 관련한 미국공급자에 대한 특혜조치, 소규모기업에 대한 특혜조항 등도 같은 맥락에서 폐지여부가 주목된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UR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정부구매법규는 UR 정부구매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게 별다른 우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향후 정부구매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마무리짓는데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김규태, “미국의 통상관련법 개관”, 산업연구원, 1996. 6.
- Buy American Act, Title III, Section 2.
- GATT,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1994.
- Georgetown Law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The Buy American Act of 1988 : Legislation in Conflict with U.S International Obliga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20, No.3, 1989.
-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Uruguay Round Committee : Subcommittee on Unfair Trade Policie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Products in Government Procurement”, in 「Unfair Trade : The Complete Report on Unfair Trade Policies by Japan’s Major Trading Partner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1993.
- J. D. Southwick, “Binding the States : A Survey of State Law Conformity with standards of the GATT Procurement Co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Vol.13:1, 1992.
- NAFTA, Article 1024 : 3.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Schott, Jeffrey J. assisted by Johanna W. Buurman, “The Uruguay Round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ton D.C., 1995.
- Service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on United State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Problems of Doing Business with The U.S.”, 1993.
- Trade Agreement Act of 1979 Statements of Administrative Action, H.R. Doc. No.153, Pt. II, 96th Cong., 1st Sess. 532(1979).
-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ement by Department of Commerce Ron Brown to the Senate Banking Committee”, 12 October 1995.
- Vinod Rege,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Issues of Concern and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Vol.35,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WTO,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1996.

- _____, "WTO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994.
_____, "Trade Policy Review : United States",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U.S. Government Procurement

Yoon, Choong Won · Ha, Hyun Soo

The governments of almost countries have the rules and procedures that the purchasing entities have to follow,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est value for money spent is obtained in procuring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re are often some of important problems in their rule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Namely, almost countries have a variety of discriminatory regulations for foreign suppliers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s with the object of national security, economic welfare, and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is reason, several advanced countries had reached the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during Tokyo Round(1973-1979) and Uruguay Round(1986-1994). However, the provisions of two agreements do not apply to all products made by the government but only to those made by purchasing entities specified by each member country in its list in the Appendix. Accordingly, the size of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from foreign suppliers were comparatively not large.

As we know well, the United States have spent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budget. But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foreign suppliers is still small, compared with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domestic suppliers. The main reason are that U.S. has applied for long time the so-called Buy American Act to government procurement positively and maintained many kinds of other domestic regulations which have discriminatory provisions for foreign goods and foreign suppliers.

On the recognition of these points, this thesis deals with the Buy American Act and other U.S. domestic laws, regional and b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s a resul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concerns and problems in the U.S. regulation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It include the provisions on priority procurement of U.S.-produced products, local contents requirements, set-aside procurement from small business, and exclus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Key-words : U.S. Government Procurement, Government Procurement Regulation, U.S. Trade Law
--